

# 13. 안전·보건 총괄 및 관리책임자 선임

##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

- ①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장에서는 그 사업장에서 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했을 때에는 그 선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 2.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대상사업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관계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한 상시근로자가 100명(선박 및 보트건조업, 1차 금속 제조업 및 토사석 광업의 경우에는 50명) 이상인 사업이나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건설업으로 한다.

## 3.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 등

-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 작업의 중지
-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관계수급인 간의 사용에 관한 협의·조정 및 그 집행의 감독
- 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 등의 사용 여부 확인

####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시행령 제14조)

- ①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인 공사를 시행하는 건설업.**
- ② 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③ 사업주는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1차 500만원, 2차 5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이하 과태료

####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서

본 사	① 사 업 장 명		② 사업주 또는 대 표 자	
	③ 소 재 지			
현 장 개 요	④ 현 장 명		⑤ 발주자 또는 도급인	
	⑥ 소 재 지			
	⑦ 공 사 기 간	~	⑧ 공 사 금 액	
구 분	내 역	성 명	자 격	직위 및 직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합니다.

20    년    월    일

선임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선임서

본 사	① 사업장명		② 사업주 또는 대표자	
	③ 소재지			
현 장 개 요	④ 현장명		⑤ 발주자 또는 도급인	
	⑥ 소재지			
	⑦ 공사기간	~	⑧ 공사금액	
구 분	내 역	성 명	자 격	직위 및 직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선임합니다.

20    년    월    일

선임인(사업주 또는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6. 직무교육 안내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동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에 의거한 교육이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는 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 7.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Safety and Health Promotion Agency (SHA) Duty Education Center. The browser address bar displays <https://www.dutycenter.net/dutyedu#none>. The navigation menu includes: Home, 인터넷교육센터, 직무교육센터, 집체교육, 로그인, 회원가입, 검색, 사이트맵, and English. The main banner area features an illustration of a worker in a hard hat and safety vest, with the text "환영합니다." (Welcome) and a message: "직무교육은 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전문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입니다. 고객님의 '매우만족'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러닝교육부가 되겠습니다." To the right of the banner is a login form titled "안전보건공단 직무교육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with fields for "아이디 입력" and "비밀번호 입력", a "로그인" button, and options for "아이디저장",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재설정", and "회원가입". Below the banner is a row of service icons: 수강신청, 위탁교육기관안내, 교육일정, 수료증 출력, 전자 계산서 출력, and 신용카드 전표출력. At the bottom, there is a blue banner for "직무교육신청" (Job Education Application) with the text "나에게 맞는 직무교육을 선택하세요." (Choose the job education that suits you).